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31
----------	-------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위임범위 일탈로 상위법령과 상충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 부지 매입 비용 산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과비용 청구로 인해 사업시행자에 혼란을 예방코자 함.

□ 주요내용

- (위임범위 일탈) 법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위임 → 주민편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 (대법원 판결) 정비대상 규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조례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법·무효 판결

※ 3개 지자체의 조례에서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고 3건 각각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위법한 조례로 판단함(2016두54039판결, 2016두35229판결, 2014두1437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두54039 판결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례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축진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규정은 폐기물시설축진법 및 시행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 문언의 해석상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비용부담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조례 규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2. 18. ~ 3. 9.(20일간)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련법령 발췌서 :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4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붙임 1】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원순화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원시설팀장 이갑상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장한림 (행정 2239)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부지면적 × 부지매입단가

가. 총 부지면적 산정기준 : 시설부지 면적 + 주변녹지대 면적

1)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톤	1기 기준 4,000㎡이하
	100~300톤/일	30㎡/톤	1기 기준 4,000㎡이하
	300~500톤/일	20㎡/톤	1기 기준 4,000㎡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1기 기준 4,000㎡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일 이하	330㎡	-
	500톤/일 초과	500㎡	-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2)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나. 부지매입단가 산정기준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회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1)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부대시설을 포함) 설치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 (1일 발생 예상 불연성 폐기물량 + 1일 발생 예상 재활용 폐기물량 + 1일 발생 예상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 × 1.3(변동계수)

2)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출 방법

납부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환경부가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누고,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

나. 자원화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1)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부대시설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 규모지수

2)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출 방법

납부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환경부가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누고,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

3) 규모지수

구 분	규모지수	비 고
1 ~ 10톤/일	1.2	
11 ~ 29톤/일	1.1	
30 ~ 49톤/일	1.0	
50 ~ 99톤/일	0.9	
100톤/일 이상	0.8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p> <p>1.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부지면적 × 부지매입단가</div> <p>가. 총 부지면적 산정기준 : <u>시설부지 면적 + 주민편의시설 면적 + 주변녹지대 면적</u></p> <p>1) 시설부지 면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구 분</th> <th>소 요 면 적</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폐기물처리시설</td> <td>100톤/일 이하</td> <td>40㎡/톤 1기 기준 4,000㎡이하</td> </tr> <tr> <td>100~300톤/일</td> <td>30㎡/톤 1기 기준 4,000㎡이하</td> </tr> <tr> <td>300~500톤/일</td> <td>20㎡/톤 1기 기준 4,000㎡이하</td> </tr> <tr> <td>500톤/일 초과</td> <td>10~15㎡/톤 1기 기준 4,000㎡이하</td> </tr> <tr> <td rowspan="2">관리동</td> <td>500톤/일 이하</td> <td>330㎡ 작업인원 35~50명 기준</td> </tr> <tr> <td>500톤/일 초과</td> <td>500㎡ 작업인원 50~70명 기준</td> </tr> <tr> <td rowspan="2">세차동 등 기타 시설</td> <td>500톤/일 이하</td> <td>330㎡ -</td> </tr> <tr> <td>500톤/일 초과</td> <td>500㎡ -</td> </tr> <tr> <td>건폐율</td> <td>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td> </tr> </tbody> </table> <p>2) 주민편의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적용</p> <p>3)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p>나. 부지매입단가 산정기준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p>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톤 1기 기준 4,000㎡이하	100~300톤/일	30㎡/톤 1기 기준 4,000㎡이하	300~500톤/일	20㎡/톤 1기 기준 4,000㎡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1기 기준 4,000㎡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 시설	500톤/일 이하	330㎡ -	500톤/일 초과	500㎡ -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p> <p>1.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부지면적 × 부지매입단가</div> <p>가. 총 부지면적 산정기준 : <u>시설부지 면적 + 주변녹지대 면적</u></p> <p>1) 시설부지 면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구 분</th> <th>소 요 면 적</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폐기물처리시설</td> <td>100톤/일 이하</td> <td>40㎡/톤 1기 기준 4,000㎡이하</td> </tr> <tr> <td>100~300톤/일</td> <td>30㎡/톤 1기 기준 4,000㎡이하</td> </tr> <tr> <td>300~500톤/일</td> <td>20㎡/톤 1기 기준 4,000㎡이하</td> </tr> <tr> <td>500톤/일 초과</td> <td>10~15㎡/톤 1기 기준 4,000㎡이하</td> </tr> <tr> <td rowspan="2">관리동</td> <td>500톤/일 이하</td> <td>330㎡ 작업인원 35~50명 기준</td> </tr> <tr> <td>500톤/일 초과</td> <td>500㎡ 작업인원 50~70명 기준</td> </tr> <tr> <td rowspan="2">세차동 등 기타 시설</td> <td>500톤/일 이하</td> <td>330㎡ -</td> </tr> <tr> <td>500톤/일 초과</td> <td>500㎡ -</td> </tr> <tr> <td>건폐율</td> <td>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td> </tr> </tbody> </table> <p>2)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p>나. 부지매입단가 산정기준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p>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톤 1기 기준 4,000㎡이하	100~300톤/일	30㎡/톤 1기 기준 4,000㎡이하	300~500톤/일	20㎡/톤 1기 기준 4,000㎡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1기 기준 4,000㎡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 시설	500톤/일 이하	330㎡ -	500톤/일 초과	500㎡ -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톤 1기 기준 4,000㎡이하																																															
	100~300톤/일	30㎡/톤 1기 기준 4,000㎡이하																																															
	300~500톤/일	20㎡/톤 1기 기준 4,000㎡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1기 기준 4,000㎡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 시설	500톤/일 이하	330㎡ -																																															
	500톤/일 초과	500㎡ -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톤 1기 기준 4,000㎡이하																																															
	100~300톤/일	30㎡/톤 1기 기준 4,000㎡이하																																															
	300~500톤/일	20㎡/톤 1기 기준 4,000㎡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1기 기준 4,000㎡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 시설	500톤/일 이하	330㎡ -																																															
	500톤/일 초과	500㎡ -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현 행	개 정 안																																				
<p>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p> <p>가. 회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p> <p>1)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부대시설을 포함) 설치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 (1일 발생 예상 불연성 폐기물량 + 1일 발생 예상 재활용 폐기물량 + 1일 발생 예상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 × 1.3(변동계수)</p> <p>2)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출 방법 납부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환경부가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의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누고,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p> <p>나. 자원화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p> <p>1)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부대시설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 규모지수</p> <p>2)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출 방법 납부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환경부가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의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누고,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p> <p>3) 규모지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규모지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10톤/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 ~ 29톤/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 ~ 49톤/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 99톤/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0.9</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톤/일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0.8</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규모지수	비 고	1 ~ 10톤/일	1.2		11 ~ 29톤/일	1.1		30 ~ 49톤/일	1.0		50 ~ 99톤/일	0.9		100톤/일 이상	0.8		<p>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p> <p>가. 회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p> <p>1)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부대시설을 포함) 설치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 (1일 발생 예상 불연성 폐기물량 + 1일 발생 예상 재활용 폐기물량 + 1일 발생 예상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 × 1.3(변동계수)</p> <p>2)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출 방법 납부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환경부가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의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누고,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p> <p>나. 자원화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p> <p>1)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부대시설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 규모지수</p> <p>2)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출 방법 납부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환경부가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의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누고,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p> <p>3) 규모지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규모지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10톤/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 ~ 29톤/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 ~ 49톤/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 99톤/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0.9</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톤/일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0.8</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규모지수	비 고	1 ~ 10톤/일	1.2		11 ~ 29톤/일	1.1		30 ~ 49톤/일	1.0		50 ~ 99톤/일	0.9		100톤/일 이상	0.8	
구 분	규모지수	비 고																																			
1 ~ 10톤/일	1.2																																				
11 ~ 29톤/일	1.1																																				
30 ~ 49톤/일	1.0																																				
50 ~ 99톤/일	0.9																																				
100톤/일 이상	0.8																																				
구 분	규모지수	비 고																																			
1 ~ 10톤/일	1.2																																				
11 ~ 29톤/일	1.1																																				
30 ~ 49톤/일	1.0																																				
50 ~ 99톤/일	0.9																																				
100톤/일 이상	0.8																																				